

의안번호	2213183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5.11.19.
추 계 번호	25C526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제2항)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을 일부 변경함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대출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는 ①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때 또는 ②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때 중 이른 시점까지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됨¹⁾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

- 개정안은 이자 면제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확대함
- 또한, ①고등교육기관 졸업 전 기간과 ②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
 -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등에 대해 이미 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²⁾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는 매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금에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에 따른 지원분이 포함됨³⁾
 - 참고로, '25년 기준 채무자의 이자 면제에 편성된 예산은 98억 4,400만원임
 - * [참고자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상자 수, 대출잔액 및 이자 면제 기간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액임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분
- (기간 확대) ①졸업 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채무자와 ②졸업 2년 경과 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분

[표]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이자 면제 여부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졸업 전 상환기준소득 초과	이자 부과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 이내 상환기준소득 초과	이자 면제	이자 면제
졸업 2년 경과 후 상환기준소득 초과	이자 부과	이자 면제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대상자 수, 대출잔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면제 대상자의 범위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학자금대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음
 - 또한 채무자의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점에 따라 이자 면제 여부가 달라짐에도 해당 시점을 알 수 없어 이자 면제 기간 산정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원 조달 비용 지원	191,020	186,863
이전연도 채권 이자비용	186,020	192,144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23,863	32,589
이자면제 지원분	△18,863	△37,870
이자면제 지원	18,863	37,870
균이자면제	992	529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593	4,928
다자녀 이자면제	7,064	17,731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8,214	9,844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	4,838

주: 채무자에 대한 이자면제 제도는 '24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